

## 개정 정간물법 해설

강경근

송실대 법학과 교수

### I. 정간물법 개정과 개정전 법제상황

#### 1. 정간물법의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이 95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정간물법 개정은 1987년 11월 28일 법률(제 3979 호) 제정 이후 89년과 91년의 정부조직법이나 전파법개정에 따른 부수개정에 이은 기본적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총칙 (1 장)과 등록(2 장) 그리고 침해에 대한 구제(3 장) 및 벌칙(4 장)으로 되어 있는 정간물법상, 정기간행물의 정의와 그에 따른 법 목적은 변함없이 정간물 「발행과 등록, 침해에 대한 구제」로 되어 있지만, 이를 구현하는 언론중재가 보다 더 언론피해의 권익구제를 용이하게 하도록 그 절차 내용이 보완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구제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권한 등의 강화를 위한 관련조항 상당수가 개정되어,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 내지 시민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권익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보강된 것이다. 여기에 언론에 의한 권익 침해를 원천방지하기 위한 사이비언론 말소장치로서, 발행인 결격사유 확대 및 직권 등록취소 인정 등과 더불어 언론매체 설립등에 있어서의 자유언론 보장을 위한 정간물 등록요건 완화개정을 동시에 행하는 등 정보화사회에 대응한 책임언론 교양과 동시에 언론자유 신장을 위한 개정입법으로 볼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언론중재제도 관련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해설하며 정간물등록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다만 그 개정규정 언급에 그치고자 한다.

#### 2. 언론중재제도의 연혁

언론보도가 미치는 공공이익이나 타인 기본권에의 큰 영향력 때문에 언론은 헌법상 책임과 의무(헌결 1992. 6. 26, 90 헌가 23)를 진다. 헌법 제 21 조 제 4 항이 의미하는 바도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명제가 지니는 자유언론과 책임언론의 조화적 구현에 있다.

언론침해에는 헌법적 구제외에 민·형사적 구제[특히 민사구제로서 금전배상외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인 사죄광고(헌결 1991. 4. 1, 89 헌마 160 위헌결정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음)나 정정보도청구]는 물론 특별법인 정간물법상 반론권 등이 있는 바, 이러한 제도들에 관한 사항이 정간물법상 언론중재제도의 중요내용으로서 이번 법개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정간물법 개정에서 보완된 언론중재제도는, 1981년 반론권 등을 정정보도청구권의 형식으로 규정한 1980. 12. 제정. 법률 제 33477 호 언론기본법(법 49 조) 및 1981. 3. 31. 업무개시한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로부터 시작되어 언기법 폐지후 대체입법인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1987년)이후 지금까지 약 14년간 그 제도적 개선이 운위되어 왔다. 다만 초기 정정보도 청구권이나 반론권에 대한 언론인 등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법제 분수령은 1964. 8. 5 법률 제 1652 호 언론윤리위원회법 제정과정(9월 9일 대통령 공포없이 시행보류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과 1980년 언론기본법 시행이었는데, 특히 전자를 둘러싼 「파동」은 우리언론의 성격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 정부의 언론 「기업」에 대한 통제 등 권·언유착에의 인식이 정정보도청구권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중재제도의 자유언론위해라는 오해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당시 언론윤리위원회법도 신문 방송 등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법 1조)를 목적으로 언론윤리위원회와 언론윤리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위원회는 언론윤리강령을 제정 공표 (법 3조 1항)하고 심의회는 위원회의 상설심의 기관(법 5조 1항)으로서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내용의 윤리규정 저촉여부를 심의 판정(법 5조 2항)하였다. 윤리강령에는 정간물 및 방송의 사회적 책임, 보도논평의 공정성 보장이나 인권존중, 타인 명예나 사생활 비밀보장 등을 포함(법 3조 2항)하였다. 또한 심의회는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 의하여 부당한 침해를 입은 자가 그 내용이 위의 윤리강령에 저촉됨을 이유로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판정 (법 12조)하여 그 저촉부분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권고 또는 경고 판정을 하며(법 13조 1항) 저촉되지 아니하더라도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마찬가지로(동 2항)였다. 그러나 기사 또는 방송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심히 과장된 것으로서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한 것으로 윤리강령에 저촉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해명 정정사과기사 또는 방송을 할 것을 판정지시(동 3항)한다. 이 법에서는 「공표문의 게재 및 방송의무」라 하여 심의회의 판정공표 내용의 게재(법 14조) 및 심의에 대한 불복 그리고 행정소송(법 15조)에 대하여 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후에 언론기본법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속에 흡수되게 된다.

5 공헌법(1980. 10. 27.)은 언론자유(헌 20조 1항)규정과 동시에 공적 책임(헌 20조 4항)을 특히 언급하는 조항을 두었다. 사실 제 3 공화국(1962) 제 18조 제 5항에서 처음으로 언론 책임성에 관하여,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이후 5 공헌법 제 20조 제 2항(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대하여 제정된 구 언론기본법상 정정보도청구권(사실상 반론권인) 규정과 그에 대한 첫 판례(서울민사지방법원 1982. 9. 3. 선고, 82 카 18633 판결) 이후, 1986년 1월 28일 대법원선고 85 다카 1973 판결은 정정보도 청구권을 반론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중요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언론기본법 제 6장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법 48-51조) 취지에도 불구하고 언론 입장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 때 생각으로 이것이 언론통제의 한 수단으로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필요이상의 경계를 늦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해구제제도로서의 정정보도 청구권은 1987. 조. 28 언기법 폐지일에 제정된 정간물법 제정에 의해서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었다. 현행헌법(1987. 11. 29.) 역시 5 공헌법 유사

규정을 제 21 조 제 4 항에 두었고 비록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개정전 정간물법에서도 정정보도 청구권은 계속 유지되었다.

### 3. 개정 논의

언론중재제도 개선논의는 오래전부터 행하여져 이미 그 개선대안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학회의 1989. 12. 7.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구제제도의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서정우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향)는 사건 신속처리 위한 상근 중재위원, 명백한 오보나 허위 보도로 인정될 경우 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일치된 견해), 손해배상중재(명령)권 인정(신청인은 압도적 지지), 중재위원 구성방식의 공공성확보(중재위원회를 단순 피해구제기관 아닌 언론의 공적 감시기구로 인식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고, 손해배상명령제도 도입(김성남)의 편도 있었다. 1991 년 세미나에서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도 1987 년 정간물법상 중재위원회에 소극적 조정기능 이상의 권한부여가 없는 점은 불완전 개선이라 하면서, 중재위원회의 기능과 분쟁해결권한 강화방안으로서 위원회의 강제중재권 인정, 손해배상명령제 도입, 중재위원회에의 정정보도청구를 위한 언론중재 신청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청구 병합신청 가능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언론사와 개인간 분쟁은 기본적으로 민사적 문제로서, 그 효율구제를 가능케 하는 정정보도청구권과 같은 제도가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언론사는 언론중재시 약자는 오히려 피신청인인 언론사이며 언론중재위원회 권한 강화로 언론통제위원회로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할만큼 제도자체에 대한 이해가 미진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1992. 8. 26. 개최된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양삼승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 - 반박보도청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종래 우리나라 법제는 보도된 사실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언론에 보도된 자에게 반박기회를 부여하는 반론권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완화 방안으로 규정된 (말 그대로의) 언론중재제도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었지만, 그 제도적 미비 등의 운영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위 · 위상 등에 관한 재검토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1993. 11. 9. 국회 문화체육 공보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언론중재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양삼승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 개선방안]은 정간물법 개정 필요성이 계속 있어 왔으며 그 논의 내용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반론권 제도와는 그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언론중재 제도의 대상으로 함은 이론상 적절치 아니하므로 반론권만을 중재대상으로 하고, 종래 반론권제도를 실무운영 경험에 비추어 대폭 정비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기능 이외에도 광범위한 사전 사후적 언론피해 방지 · 구제권한 부여로 종합기구로 승격시키자는 것 등이었다. 그리하여 개정안 기본방향으로 반론권 외에 정정보도청구까지도 중재대상으로 규정하며, 정간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란 용어를 반론권으로 통일하며, 그 해당기간 연장, 청구권자가 권리주체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의 시정으로 관청, 기관, 기타 단체에도 당연히 인정하고, 피청구인을 종래 대법원의 예규에서와 같이 언론사로 하며, 반론보도 내용 범위를 보완하여 한자, 문구, 삭제 등을 예시하였다. 이 밖에 중재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하여서도,

조정기능을 넘어 실질적 중재권한을 부여하며, 구성에 있어서도 그 권한이 확대된 만큼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밖에 추후보도청구권에 있어서도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를 보다 반론권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형태로 종결된 때로 하였다. 그리고 이것들에 관한 언론침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 II. 단일구제법 이전 기존법개정 형식

### 1. 법개정 형식의 개정

언론중재의 주된 사항인 반론권을 규정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방송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종합유선방송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이란 표제하에 사실상 반론권의 구체적 실현을 도모하고 있었다. 다만 이 권리가 실제로는 반박보도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의 성격에 상응한 내용대로 이를 구현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으며 나아가 말 그대로의 정정보도청구권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위원회 결정에 단순 조정권에 그치지 아니하는 중재결정권까지 부여하여 그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포함하는 기타의 여러가지 사법적 구제절차를 담은 언론침해 구제를 규정하는 단일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의 법개정에서는 기존 정간물법 제 3 장의 개정형식으로 이를 처리하여 정간물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하는 정간물법의 전체적 법체제하에서의 재정이라 할 수 있다.

### 2. 언론책무성의 강조

무엇보다 일반주간신문의 등록에 있어서도 특수주간신문과 마찬가지로 인쇄계약으로 발행을 가능토록 인쇄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단체·기관 등이 그 소속원등에 보급하기 위해 무가로 발행하는 간행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수주간과 월간 이하 간행물 중 무료로 보급되는 정기간행물과 주간 이하 지역신문·기타 정기간행물에 대한 등록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 등을 확대하였다. 여기서 법 제 6 조 4 항의 시설기준 완화 규정은 현재 1992. 6. 26. 선고, 90 헌가 23 결정에서 판시한, (구)정간물법 제 7 조 제 1 항 제 9 호 소정의 제 6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을 자기소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필요이상의 등록사항을 요구하는 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으로 헌법(헌 12 조 1 항, 21 조 3 항, 37 조 2 항)에 위반된다는 것에서 연유한다고 하겠다.

#### (1) 언론모체 설립자유 확대규정

|           | 改正前(법6, 7조)                                                                              | 改正後(법6, 7조)                                                                                                            |
|-----------|------------------------------------------------------------------------------------------|------------------------------------------------------------------------------------------------------------------------|
| 施設基準      |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수주간 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법6조 4항)                  |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가 인쇄시설을 보유하고 그것만으로써 발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6조4항) |
| 登録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법7조1항)                          |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無料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법7조1항)                                                         |
| 地自體에의委任擴大 | 기업체나 순수히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간물 등록업무의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위임(법7조6항) | 특수주간신문과 월1회 이하 발행 간행물중 무료보급하는 정간물, 특정지역 대상으로 주2회 이하 발행하는 정간물, 기타 간행물중 주2회 이하 발행하는 정간물의 서울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법7조8항)    |

다만 이러한 현행 개정법의 이행 적용에 있어서는 그 과잉행사가 없어야 자유언론 위축가능 규정이라는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본다. 예컨대 폐지된 언론기본법(1980. 12. 31. 법률 제 3347 호 제정, 1984. 12. 31. 법률 제 3786 호 개정)은 기존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언론윤리위원회법」, 「방송법」내용의 흡수(법부칙 2 조) 법률로서, 「신문 통신 등 정기간행물 발행과 방송」(법 5 조 1 호에서 언론이라 정의)의 자유를 보장(법 2 조 2 항)한다지만 언론의 공적책임(법 3 조)을 특히 강조하여, 등록(법 20 조)시 규제라든지 등록 취소(법 24 조)사유의 불명료성, 행정 참고사항에 불과한 미등록 발행자에 대한 형벌부과(법 52 조)등이 3 공 당시 문제되어 폐지된 언론 윤리위원회법의 그것에 필적할만하게 「필요한」(5 공 35 조 2 항)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는 언론자유를 행정적 규제으로써 제한할 수도 있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상기해야 하겠다.

## (2) 사이비언론 배제 규정

|                | 改正前(법7, 9, 12조) | 改正後(법7, 9, 12조)                                                                                                                                                              |
|----------------|-----------------|------------------------------------------------------------------------------------------------------------------------------------------------------------------------------|
| 代表理事, 代表者の發行人性 | 규정 없음           |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법7조2항)                                                              |
| 實績維持           | 규정 없음           | 정간물등록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행시설을 유지 의무. (법7조6항)                                                                                                                                       |
| 缺格事由補強         | 규정 미비           | 정간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정간물법 위반으로 등록취소나 처벌(벌금이상)받은 경우 등록취소 또는 형집행정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9조3, 5, 6, 7, 8항) |
| 職權登録取消         | 규정 없음           | 공보처장관의 등록취소는,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1년(연2회간은 2회)이내에 발행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월1회이하 발행은 2회이상) 발행중단한 때에 할 수 있고, 그 공정·객관적 심의 위한 심의위원회를 공보처장관 소속하에 두되 구성·심의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법12조외2)        |

### 3. 언론침해 구제기능 강화

언론침해 구제기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즉 무엇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왕 사실 보도에 대한 반박보장권리로서의 반론보도청구권(언론중재위원회의 기본적인 권한사항으로서 반드시 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에 본래 민사상 권리로서 인정되는 틀린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로서 명예회복에 대한 상당한 처분의 하나인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사항도(비록 임의적 심판 사항이기는 하나) 그 관장사항으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번 개정법에서는 반론권과 정정청구권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서 그 용어의 정의를 이른바 실무간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조정권이 종래 그 효력에 있어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중재실효성이 반감되었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는 중재 「결정권」으로 되어 보다 강력한 중재권이 위원회에 인정된 것이다. 그런만큼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이 현실화되고 법원의 판단절차등에 대해서도 그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예컨대 항소절차라든지 그 이행강제 또는 간접강제 제도라든지 불복절차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 III. 반론보도청구의 명확화와 정정보도청구의 명문화

### 1. 개정법의 내용

제 3 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 16 조에서, 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이 그 본래 용어의 의미를 찾아서 규정되었다. 즉 개정전 「정정보도청구권」으로 되어 있던

제목부분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그 용어를 정리 현실화하고 기타 청구 주체와 객체 그리고 그 기간, 상대방 및 내용에 대한 상당 정도의 개정이 있었다.

(책보기 표 29)

제 2 항에서는 에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서로, 정정보도문을 반론보도문으로 수정했다. 제 3 항 역시 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언론사로,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반론보도게재청구로,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제 4 항, 5 항의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자구 수정됐다.

## 2. 반론보도청구권의 명확화

### (1) 용어의 의미

반론권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언론수용자의 방어를 가능케 하는 무기대등이란 전제에서 혁명(1789 년) 후인 1799 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응답권에서 유래하던 것이 지금까지 적용되며, 독일은 1381. 12. 28.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언론법 이래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프랑스형은, 사실상 주장만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인정하는 독일형에 비해서, 가치비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는 등 그 범위가 넓다. 이에 반하여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반론권보다는, 명예훼손시 징벌적(punitive) 배상을 인정하는 대안을 갖고 있으나, 일본은 제 2 차 대전 후 기존의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반론권(Gegendarstellungsanspruch, droit de reponse, right of reply)이란 언론보도 등으로 특정사실이 보도된(단격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불문하고) 언론수용자가 해당 언론매체를 상대로 반론문게재요구권의 권리 형식을 행사하는 기왕 사실보도에 대한 반박 내지 해명보장권리로서, 인간존엄과 가치(헌 10 조)에 내포되어 있는 인격권이라든지 사생활비밀과 자유(헌 17 조)를 그 헌법적 근거(헌결 1991. 9, 16, 89 헌마 165)로 할 뿐만 아니라, 보도의 진실성 여부판단보다는 사실보도로 침해된 국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무기대등 입장에서 언론수용자인 국민의 반박기회 보장권리라는 점에서, 평등권(헌 21 조 4 항 2 문) 역시 그 근거(서울지법판결 서 92. 2. 20, 89 카 8917)로 된다. 나아가 언론이 타인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헌 21 조 4 항 1 문)라든지 타인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기관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배상청구 규정(헌 21 조 4 항 2 문)역시 언론기관과 언론피해자간 직접 적용되는 법조항이라는 면에서 반박권의 직접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 여기서의 반론권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언론매체접근·참여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액세스권과도 구분된다. 액세스권이 언론자유에 빠질 수 없는 한 내용인 민주적 여론형성에의 참여기회를 속성으로 한다면 반론권은 광의의 액세스권에 포함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언론침해에 대한 명예나 권리 구제형식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광의의 액세스권의 헌법적 근거는 언론자유(헌 21 조 1 항)의 구체적 기능인 여론형성과 그에 따른 민주국가 구성이라는 헌법질서에서 찾게 된다.

### (2) 용어의 정리

광의의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Access 권)은 언론수용자의 여론형성에의 참여자유를 위한 기본권이며, 거기에 좁은 의미의 반론권으로 지칭되는 정간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 포함되기에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시 언론자유라는 면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정간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운영시 반박보도청구권으로서의 반론권 외에 일정 정도는 본래 의미의 정정보도청구권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언론종사자들 주장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반론권적 성격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었다. 헌법에 기초한 반론권의 구체적 형성은 정기 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서, 보도나 방송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인격권등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정기 간행물이나 방송의 발행이거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 책임자에게 정정보도 게재청구나 정정보도 방송청구라고 하는 반론권 행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 법규정 문언은 「정정청구」로 되어 있어, 권리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반론권의 정정권에 대한 관계 의문이 폐지된 언론기본법(법 49 조) 시행때서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조문에서 정정이란 표현을 쓸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는 듯하지만,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언론기관의 사실 보도에 대한 반론내용게재청구권만 반론권에 해당되는 것이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거나 허위 보도의 정정청구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한 것(89 헌마 165)이다. 대법원(1986. 1. 28. 선고, 85 다카 1973 판결)에서도 동일 논지로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진실여부는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며, 또한(대법원 1991. 1. 25. 선고, 90 다카 25468 판결) 진실에 부합되는 원문 보도내용에 대하여서도 정정보도청구는 인정된다 한 것은 이를 보여준다. 결국 위 법률상 정정 보도청구는 보도매체 자체를 통한 방어기회 보장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 도구로서 제도로써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하는 것이지 진실발견을 통한 잘못 잡아줄 것의 청구권은 아닌 것(헌재 89 헌마 165 결정 다수의견)이다.

정간물법 제 16 조는 정정보도청구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마치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원문보도)이 허위임을 전제로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인 것처럼 오해하기 쉬우나(대판 1986. 1. 28, 85 다카 1973), 특별사정 없는 한 당해 방송기관은 그 반론내용의 진실여부를 떠나 이를 보도해 줄 의무를 지는 것은 수사기관과 같은 사법적 조사권 없는 언론기관이 반론 속성의 하나인 신속성의 제약속에서 대립되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함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게 함으로써 언론 본래 활동을 아무런 제약 없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전달받고 자기에 관한 정보를 수정 ·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데에도 부합된다(92 가합 16462).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다(85 다카 1973).

물론, 우리 법의 모범인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언론법 표제인 반론청구권(Gegendarstellungsanspruch)이란 명칭이 명백한 반론게재요구임을 인식케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정정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에 따라 기왕 보도내용은 그대로 둔채 반론 인쇄의무에 따른 반박문 게재청구만을 인정하는 독일법과는 달리, 우리 법에서는 기왕 보도내용을 바로잡아 보도한다는 정정보도 내지 정정보도문 게재의무로 규정했으며, 청구권자의 경우 독일법은 「기사관련자」의 반대입장 게재절차로 이해되나 우리법은



「피해자」의 명예권 구제절차로 해석되기에 적합하며, 정정보도청구시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수적 중재 절차(중재전치주의)를 거치게 하는 우리법은,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법에 비할 때, 반박문게재 청구 절차에 그치게 되어 정정보도청구절차만 지연시킬 뿐인 중간개입적 중재절차에 불과하며, 이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기능 등으로 볼 때 위 정정보도청구절차를 반박문게재절차라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 (3) 평가

정간물법 개정에 의해서 논란은 제도적으로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현재 반대견해가 말했듯이 법 개정 전 정정보도청구는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져 정정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없는바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간물법(19 조 3 항 등)의 정정보도청구권이 「기사관련 당사자의 반박문게재청구인 것으로 순화되고 뚜렷해지도록 법의 표현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고 언론기관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처분이 정정보도청구인 것으로서의 오해소지가 불식되도록」 되어야 함을 역설한 것이, 이 번 개정으로 실현된 것이다.

언론사 발행인 및 편집인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게재거부권(법 16 조 3 항)은 언론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가,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행사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이익」 여부 문구의 적절 고려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 운영에 따른 언론수용자와 언론자유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 그 증명은 언론사측에 있으며 입증 정도에 대한 판단 역시 이 제도를 보다 완벽하게 반론권으로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언론의 현실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경감할 것인가에 관한 판단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번 법개정에서 반론보도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하였으니 만큼 반론청구의 인정 범위는 보다 넓혀지리라 본다.

### 3. 반론청구의 주체·객체 상대열의 명확화와 행사기간의 조화

언론피해구제와 언론자유의 상관성 때문에 개정전 정간물법 제 16 조에서, 정정보도 청구인은 「정기간행물(또는 방송, 종합유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법 16 조 1 항)라고 하였는데, 반론권이 언론사보도에 대한 언론수용자의 무기대등원칙 구현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 「보도」에 「관련있는」 자라는 용어가 쓰여졌어야 할 것이었다. 따라서 사실적 「주장」이라든지 피해를 「받은」 자라는 법문상 문구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반론청구권으로의 명칭 변경에서 볼 때 반론권 본래 의미에 합치되게끔 「전리의 주체」가 「피해받을 것」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과 보도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간의 개별적 관련성만 지니면 일응 피해있는 것으로 보아야지 신청인의 인격적 · 재산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되므로, 이번의 개정실익은 정정보도 신청인의 구체적인 피해의 주장이나 입증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권리 주체라는 용어의 법률적 선 인식으로 인해서 예컨대 관청, 기관 기타 단체가 피해자인 경우에 그 실질에 부합하는 반론권 행사가 「실무상 어려움」(양삼승,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 개선방안, 1993. 11. 9, 정책 토론회보고서, 14 쪽)이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기관·단체를 대표한다고 하는 등 보다 진전된 개정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의 상대방 역시 개정 전 발행인이나 편집인에 대한 사실상의 확인이 어려워져 그 행사에의 장애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에서도 「언론사」로 하였던 것을 그대로 개정한 것이다.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법 16 조 4 항), 그 내용은 독자투고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고,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법 16 조 5 항)고 한다. 여기서 제 5 항은 특히 문제 많은 조항으로서 재검토할 만한 조항이나, 이번 개정에서는 고려되지 아니 하였다.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보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언론기관의 의견이나 비평, 논평 등 의사표현 내지 가치판단에 해당되는 보도에 대하여는 반론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마치 어떠한 경향성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여 보도한 부분은 의견표현에 해당되어, 신청인의 주관적 의도와는 달리, 신청인의 교육 활동을 잘못 평가하여 보도하였더라도 반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서울지법 판결 1992. 2. 20, 89 카 8917). 그리하여 어떤 보도나 표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되느냐 또는 가치평가나 의견에 해당 되느냐는 그 보도표현 내용에 대한 「입증가능 여부」에서 구해야 할 것이며, 이번 개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명료한 기준설정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

반론청구의 행사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전에는 너무 단기이어서 청구권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실무상 제기되어 오던 것을 고친 대신, 불확정한 법적 상태의 장기방치를 피해서 언론사의 법적 안정성도 참작한다는 입장에서 사실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 월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하였다.

#### 4. 정정보도청구제도의 도입

반론보도청구권 외에 정간물법과 관계없이 민법 제 764 조에 의해서 인정되는, 말 그대로 틀린 보도를 정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등에 대하여 법원이 그 언론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하나로서 이행하도록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사는 언론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10 년,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년 이내까지는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개정 정간물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과는 달리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대해서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피해자 스스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중재를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개정전 정간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이 반론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정정보도로 되어 있는 관계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실무상으로는 오히려 민법(7764 조)상 인정되는 정정보도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점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는 민법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정보도가 아니라 가능한 한 정간물법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반론권에 대해서만 중재대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위에서 본

현재결정은 이를 확인한 것이며 이법의 법개정에서 반론권 외에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IV. 언론중재위원회 구성과 권한의 현실화

##### 1. 기능적 강화

6·29 이후 정간물법에 따라서 늘어난 1993년 언론매체 수 7,060개는 1987년의 2,236개에 비해서 엄청난 수였고 이에 따라 자연 취재 · 보도경쟁이 가열됨으로써 「사실확인 없는」 오보라든지 일방 당사자의 의견 보도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언론의 상업성에 따른 선정, 폭로성 등으로 언론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 정간물법상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내용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와 언론사간 분쟁중재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가 특히 중요시된다. 그렇지만 피해당사자의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기간, 중재이의 기간 및 중재처리기간의 단기,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중재합의율의 저조함 및 불합의시 중재불성립등에 따른 중재 실효성의 미진함 등의 제도적 문제점들 및 소액손해배상에 관한 중재제도의 도입 등 제도신설에 관한 사항들이 언론중재의 실질적 기능의 강화와 정착을 위한 법개정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改正法의 内容

|                     | 개정전(법18조)                                                             | 개정후(법18조)                                                                                                                                                                                                                       |
|---------------------|-----------------------------------------------------------------------|---------------------------------------------------------------------------------------------------------------------------------------------------------------------------------------------------------------------------------|
| 중재<br>신청<br>기간      | 분쟁된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1<br>월 정정보도 청구일로부터 14일<br>이내                          |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월 사실보<br>도가 있는 후 6월 피해자와 언론사간 중재불<br>성립된 날로부터는 14일 이내 (1항)                                                                                                                                                     |
| 신청<br>절차            | 언론사에 대한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절차(법16조2항-7항)를 준용<br>(개정되지 않음)                    |                                                                                                                                                                                                                                 |
| 증거<br>조사            |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 →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3항)                                                                                                                                                                                                          |
| 출석<br>요구            | 중재당사자나 이해관계자<br>불출석시 신청철회로 봄. 피신<br>청인의 2회불출석시 중재신청<br>내용대로 합의된 것으로 봄 | → 당사자(4항)<br>불출석시 신청취하로 봄(5항)<br>피신청인의 2회 불출석시 중재신청 취지에<br>따라 합의된 것으로 봄(5항)                                                                                                                                                     |
| 중재<br>결정권           | 규정<br>없음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br>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br>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br>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br>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br>결정을 한다.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때에<br>는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br>여야 한다(6항)<br>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있다(동7항). |
| 중재결정<br>에의이의<br>신청권 | 규정 없음<br>(중재결정권 자체가 없으므로)                                             | 당사자가 중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br>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중<br>재결정은 효력 상실한다(동7항).                                                                                                                                                         |

법개정에 의해서 반론보도청구권이 규정되었다면 그와 더불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으로서 반론권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의 정정보도청구권까지 단일 법속에 수용하면서 이를 다룰 중재위원회를 언론중재 총괄기관으로 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 이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 내지 공적 기능에 걸맞는 사회내 자율적 기관에 의한 언론 침해구제 문제의 총괄 해결 도모로 국가권력에 의해서 자칫 가져올지도 모르는 언론자유 위축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 2. 강제적 중재권의 인정

언론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은 자유나 권리라는 성격 이상의 가치구현이라는 우월적 지위 측면과 동시에 언론에 의해서 명예·권리 등을 침해당한 국민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또 다른 한쪽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가운데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양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화적 기능의 최우선적 이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러한 조화기능의 실효성 있는 구현을 위하여서라도 중재위원회에 강제적 조정권 부여라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강제 중재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언론의 막강함 때문에 반론권 행사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언론피해자에게 신속·간편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사측으로서는 직접 피해자와 대면함으로써 오는 감정상 어려움을 언론중재위에 넘기는 명예를 지닐 수 있으며, 법원은 전문성을 지닌 언론중재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함에 따라서 언론피해자는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바(개정전 법 19 조 1 항), 이러한 심판청구는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현재 법원에서 행하는 정정보도 판결은 모두 중재위원회를 거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 764 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하나로서 말 그대로 인정되는 [정정보도청구를 법원판결에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간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받은 자(법 16 조 1 항)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법 개정전 침해구제는 그야말로 확정효력 있는 중재 아닌 말 그대로 「조정권」에 불과한 권한일 뿐만 아니라 중재위원회를 꼭 거치도록 함으로써, 법원에 의하여 실천되고 민법상 인정되는 정정보도권 실현의 지연방벽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그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의한 실질적 해결이 강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적 중재권한 부여가 특히 요구되었었다. 개정전 정간물법상 강제성있는 실질적 해결로서 인정되는 경우란 당사자간 임의합의가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법 18 조 6 항)있는 경우와, 피신청인의 2 회에 걸친 불출석으로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게재 합의(법 18 조 조항)된 것으로 보는 때에 한정될 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중재결정에 강제권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신청인인 언론사가 정정보도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92 서울중재 133)하여 중재불성립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이익 없다(92 카기 649)는 것을 이유로 한 언론사(서울신문사) 승소결정을 내린 경우, 법개정 후에는 강제적인 중재결정권이 인정되는 만큼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리라 본다.

### 3. 언론중재위원회 구성의 강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결정권까지 주어진 만큼 그 구조와 구성원 자격에 대해서도 개정이 있었다. 언론보도 내용이 공익합치적일 경우 그 공리적 성격이 강화되겠지만, 허위·과장·졸속·편파보도 그리고 성급한 기사작성이나 확인소홀(경찰조서 그대로의 기사작성 등)상태에서 행하여진 보도는 타인명예나 권리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론의 역기능을 더더욱 부각시킨다. 각양각색의 신문·방송매체 등 외에 최근 종합유선방송등의 등장으로 언론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더욱 커진 현실상, 한국에 특유한 언론침해 구제 제도로써 정착된 언론중재위원회의 순기능적 정착에 힘을 모으는 합의도출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중재위원회 처리하는 권한사항인 정간물법이하 방송법 내지 종합유선방송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등을 실질적인 언론피해자 구제제도로써 기능하도록, 거기에 맞게 중재위원회의 권한의 폭을 넓힌다든지 그 권능의 성격을 강화하는 등의 법개정이 특히 중요한 것이다.

## V. 사법적 구제의 강화와 맺는말

### 1. 절차의 명확화

법원에의 소 제기를 위한 전심절차이행이 요구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에만 이를 거치는 것으로 하고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직접 소 제기할 수 있음을 명정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법원 절차의 불복절차도 「판결」에 대한 항소의 방식임을 명확히 하여 종래 반론보도청구를 민소법상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였기에 추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인 이의신청으로도 가하지 아니한가에 대한 의문을 없앴다. 나아가 반론보도 인용 재판에 가처분절차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그 재판 확정 전에도 집행가능하기에 재판이 상급심에서 번복된 경우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회복키 어려운 입장에 놓일 수 있어서 반론문 게재이행의 회피나 지연수단화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법 제 19 조의 2 제 2 항을 신설하여 인용재판의 취소가능 규정으로 이를 막고, 나아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그 취소재판 내용 보도 그에 관련한 적정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 3 항을 둔 것이다.

다만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방식으로서의 손해배상의 인정 및 그 배상액수 산정의 권한은 의연히 법원의 관장사항으로 하여 종래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사항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한 입론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     | 개정전(법17조)                                                                         | 개정후(법17조)                                                                                                                                                            |
|-----|-----------------------------------------------------------------------------------|----------------------------------------------------------------------------------------------------------------------------------------------------------------------|
| 구성원 | 40인 이상 70인 이내<br>규정 없음<br><br>정당 당적 가진자와 공무원(법관자격 가진자와 교육공무원 제외)은<br>위원자격 없음(동5항) | → 40인 이상 80인 이내<br>→ 위원의 5분의1이상은 언론계<br>인사중 에서 위촉(동조2항)<br>→ 정당 당적 가진자(공선법에<br>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br>자로 등록한자 포함), 공무원<br>은 개정전과 같음, 언론사에<br>포함된 현직 언론인은 위원자<br>격 없음(5항) |

## 2. 간접강제

간접강제 제도라 함은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응하여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원래 「민사재판」상의 문제 영역에 속하는 제도인데 다만 이를 언론중재시의 반론보도에도 적용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언론사가 판결내용대로 반론보도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민소법 제 693 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간적 번거로움을 이번 개정 법에서는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소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접강제에 대한 성격이해(예컨대 이 제도가 언론 억제 수단이 아니라 언론피해자의 신속한 권익구제 제도라는 점을)에 이번 개정법이 도움을 주리라 본다.

### 改正法의 内容

|                | 개정전(법19조)                      | 개정후(법19조, 19조의2)                                                                                                                                                                                                                                                                                                                                           |
|----------------|--------------------------------|------------------------------------------------------------------------------------------------------------------------------------------------------------------------------------------------------------------------------------------------------------------------------------------------------------------------------------------------------------|
| 전심<br>절차<br>이행 |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청구(실제<br>반론보도청구권이있음) | 반론보도청구권의 경우만 중재위원회를<br>거쳐야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br>할 수 있다(1항). 따라서 민법 제764조에<br>의한 정정보도청구는 직접 제기할 수 있음<br>(2항)                                                                                                                                                                                                                                                |
| 간접<br>강제       | 규정<br>없음                       | 피해자는 반론보도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br>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간접강<br>제)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br>다(1항).                                                                                                                                                                                                                                                                      |
| 불복<br>절차       | 규정<br>없음                       |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br>합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1<br>항)/ 불복절차의 심리 결과 반론보도 청<br>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br>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br>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2항)/언론사<br>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br>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br>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br>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br>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br>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절한 손해의 배<br>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3항, 위 규정<br>들은 19조의2임) |
| 추후보<br>도청구권    |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br>태로 종결된 때   |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br>형태로 종결된 때(법20조1항)                                                                                                                                                                                                                                                                                                                 |

### 3. 추후보도청구권

정간물법(법 20 조)에서 규정하고 방송법(법 42 조)과 종합유선방송법(법 45 조 9 항)에서도 준용하는 추후보도청구권은 개정전,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1 항)」 는 부분을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의]-」 이라는 문구로 개정되었다. 이는 추후보도청구의 가능형태를 명확히 함에 있다. 예컨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 에 속하는 것은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이라든지 면소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사유로서는 보도된 내용의 사실이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상의 형식적 사유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까지 추후보도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오게 되는 반론보도청구의 상대방도 「발행인이나 편집인」 이라는 문구에서 「언론사」 로 바뀌고 동 제 3 항의 「정정보도청구권」 도 「반론보도청구권」 으로 개정되었다.

맺는 말

언론의 공적책무가 언론에 의한 사익침해 규제 목적 아닌 언론자유 제한을 가능케 한 원용개념으로 왕왕 사용된 결과 언론에 의한 피해의 당연한 구제를 마치 언론자유가 침해되는 양 책임회피를 가능케 하는 근거개념으로도 기능한 적이 없지 않았음이 우리의 법제상황이라면, 정간물법 등의 언론법제 해석적용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한국언론을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위축되면서도 사회와 개인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우월적 존재로 형성시키는데 일조한 규범이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에 의한 개인권익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공적 책무성을 부과하여 엄격한 책임귀속과 철저한 피해구제를 가능케 하는 보다 상세한 세부규정인 정간물법 시행령 마련이 긴요함은 물론, 개정 전 단순한 조정자였던 위치에서 실질적 중재권한을 지니게 된 중재위원회의 전문성과 설득력 있는 판단기능 구비를 가능케 한 이번 개정법이야말로 언론중재제도 발전에의 밑받침이 되면서 언론피해자와 언론사 모두에게 선택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평가될 수 있으리 라 본다.

- 고려대 법대 동대학원(법학박사)
- 저술 : 「정보공개제도」, 「국민투표」, 「국민주권론」,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 「정치적 헌법 개념의 의의와 목적」 외
- 현재 숭실대 법학과 교수